

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2. 15.
기획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박왕규 의원 등 5명(김정희, 서민우, 이영빈, 이진환)
- 발의일자: 2024. 2. 2.(금)
- 회부일자: 2024. 2. 2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(2024. 2. 15.)

2. 제정이유

-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달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(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)
-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조~안 제5조)
-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·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함.(안 제6조)
- 구청장이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,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)
- 구청장은 제공받은 데이터 및 달서구가 생성·보유·관리 중인 데이터가 위조·변조·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.(안 제9조)

-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에 노력하도록 함.(안 제11조)
-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: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
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비용추계서: 필요시 예산 조치
- 입법예고(2024. 2. 2. ~ 2. 13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, 우리구 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·연계·공동활용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, 대응성, 신뢰성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은
 -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분석·제공, 활성화 교육·포럼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
 -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업무 담당 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임명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고,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생성·수집 데이터의 부서별 자료제공 및 협력,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 발굴,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, 데이터기반행정의 추진현황,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.

-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데이터 정책 관련, 민·관·학 등 협력체계 구축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공공데이터의 제공·연계·활용을 통한 다양한 경제적 가치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안전성 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며 상위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할 수 있다”를 “하여야한다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9조(데이터관리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달서구가 생성·보유·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·변조·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	제9조(데이터관리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하 여야한다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